



더 자세하게 더 꼼꼼하게

안전을 지켜주세요!

2019년부터 한층 더 강화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 시행
제품 제조·수입·유통·판매 전 꼭! 확인하세요

신고·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(39개 품목, '21.6.기준)

품목군	세부 품목	신고*	승인*
세정제품	① 세정제 ② 제거제	✓	
세탁제품	① 세탁세제 ② 표백제 ③ 섬유유연제	✓	
코팅제품	① 광택 코팅제 ② 특수목적코팅제 ③ 녹 방지제 ④ 다림질보조제	✓	
접착·접합제품	① 접착제 ② 접합제	✓	
방향·탈취제품	① 방향제 ② 탈취제	✓	
염색·도색제품	① 물체 염색제 ② 물체 도색제	✓	
자동차 전용 제품	① 자동차용 워셔액 ② 자동차용 부동액	✓	
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	① 인쇄용 잉크·토너 ② 인주 ③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	✓	
미용제품	① 미용 접착제 ② 문신용 염료	✓	
살균제품	① 살균제 ② 살조제	✓	
	③ 가습기용 항균·소독제제 ④ 감염병 예방용 살균·소독제제 ⑤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		✓
구제제품	① 기피제	✓	
	② 보건용 구제·방지·유인살충제 ③ 보건용 기피제 ④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⑤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		✓
보존·보존처리제품	① 목재용 보존제 ②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	✓	
기타	① 초 ② 습기제거제 ③ 인공 눈 스프레이 ④ 공연용 포그액	✓	
	⑤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		✓

*신고 :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승인 : 국립환경과학원


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!
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?

가정, 사무실,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,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생활화학제품

* [관련 법령] 『화학제품안전법』, 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”, 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등에 관한 규정 ”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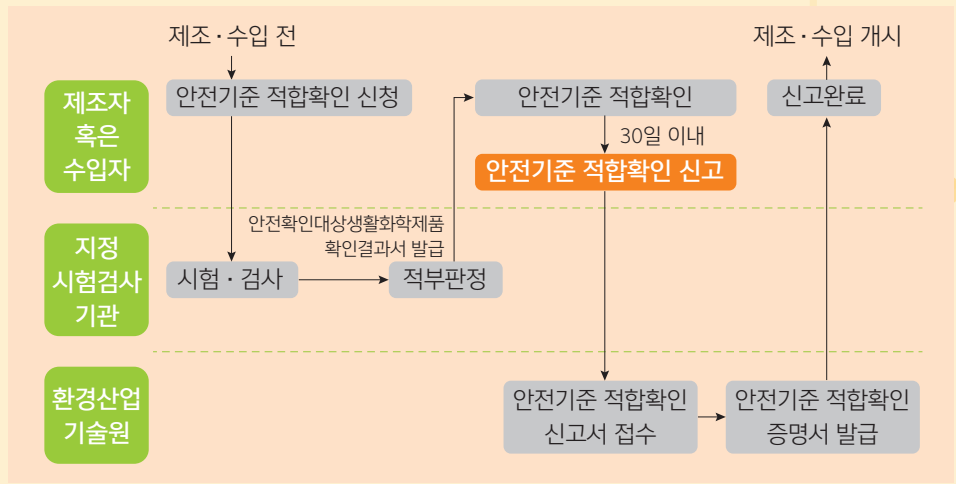
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

▶ 대상 :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

▶ 신고 절차

[STEP1]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·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

[STEP2] 성분 등 제품 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(화학제품관리시스템 : <http://chemp.me.go.kr>)



▶ 시험·검사 기관

-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한국환경산업기술원 | TEL : 02)2284-1660 |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| TEL : 02)2164-1412 |
|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| TEL : 02)2102-2682 | FITI시험연구원 | TEL : 043)711-8887 |
|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| TEL : 031)428-3848 | KOTIT시험연구원 | TEL : 02)3451-7197 |
| 한국의류시험연구원 | TEL : 031)596-5639 | | |

▶ 신고 기관

한국환경산업기술원 TEL : 1800-049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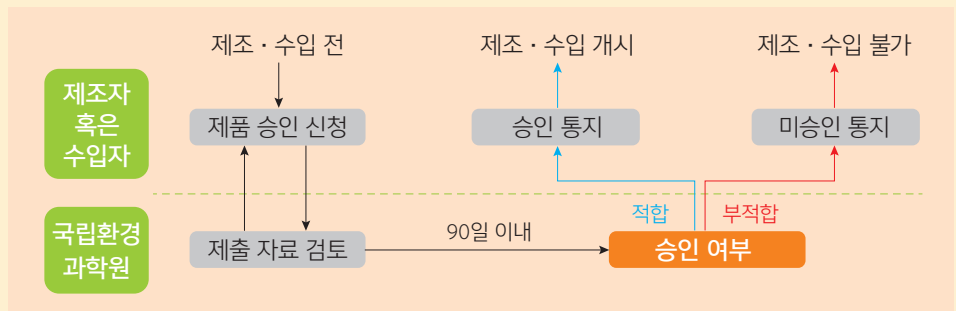
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

▶ 대상 :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

▶ 승인 절차

[STEP1] 화학제품관리시스템(<http://chemp.me.go.kr>)에서 기존제품 승인신청 / 승인변경신청

[STEP2]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



▶ 승인 기관

국립환경과학원 TEL : 1800-1253


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및 승인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, 제조·수입금지, 회수명령,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